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 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후단중 “다른 분과위원회의”를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276호(1996.3.30)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3244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1995.12.30) 부칙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본문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본인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동항본문단서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을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을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본문중 “설치의무없이”를 “주차장설치의무없이”로,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중”을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때”를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사용하는 때(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부분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본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를 “5세대”로,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로 하고, 동조 제2항본문중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 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 규정) 국가유공자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①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착공을 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와 당해 공동주택을 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